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- 531 호

#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

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시정명령(계고)를 통지(등기우편발송)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, 주소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. 06. 18.

광 진 구 청 장

1. 공고내용 :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공시송달
2. 대상자 및 내역 : 3건(내역은 붙임문서 참조)
3. 공고기간 : 2019. 06. 18. ~ 07. 02. (14일간)
4. 공고장소 :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5. 법적근거 : 건축법 제11조, 제14조 및 제79조
6. 기타사항
   - ○ 귀하께서 소유(사용)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우리구(주택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- ○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,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(☎450-76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